

우리 아이 교육비
고민 해결

2022년도

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· 교육비

지원 신청하세요!!

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


집중
신청기간

2022.3.2.(수) ~ 3.18. (금)

※ 연중 신청 가능하나,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

※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'학습특별지원금(연 10만원)'을 별도 신청(6월 예정)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조기 신청 권장

※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

지원
대상

교육급여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교육비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,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

지원
내용

교육급여: (초·중·고) 교육활동지원비, (고)교과서 대금, 입학금 및 수업료

교육비: 학교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 정보화지원(PC, 인터넷통신비), 고교 학비(입학금 및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등

신청
방법

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PC) 신청
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•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moe.go.kr)

※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

제출
서류

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
※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
교육급여와, 교육비 무엇이 다른가요?



○ 지원기준

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**동일**하고,
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**시도별·항목별** 지원기준이 **다릅니다.**
(통상 기준 중위소득 50%~80% 이하)

▶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**동시**에 받을 수 있으며,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

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.

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%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,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는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'기준 중위소득'이란?

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



'소득인정액'이란?

가구원(학생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 등)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

소득
인정액

$$= \text{소득평가액}^{(1)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^{(2)}$$

(1) 가구의 근로, 사업, 재산,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

(2) (각종재산*-기본공제액-부채) × 월 소득환산율

* 재산 : 토지, 주택, 전월세보증금, 예금, 주식, 보험, 자동차 등

지원기준



○ 교육급여
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○ 교육비

① 저소득층 자격 보유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「한부모 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- 법정 차상위 대상자

| 법정 차상위 종류

구 분	내 용
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	「국민건강 보험법」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
차상위 장애(아동) 수당 대상자	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장애(아동) 수당을 받는 자
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	「장애인 연금법」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	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

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“시도별 지원 기준”에 해당

③ 학교장 추천 :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

※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코로나9 확산으로 가계 소득·재산 증빙이 어려우나,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, 교육비 지원 사업이 필요한 학생 포함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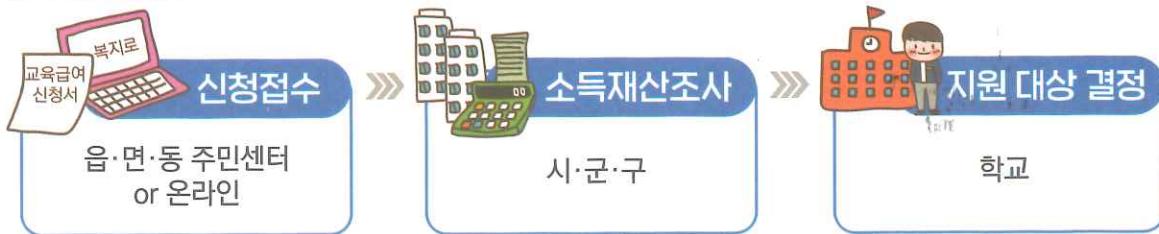
○ 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

자격 구분	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 지원	
					PC	인터넷 (유해차단)
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○		○	○	○
	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○		○	○	○
	법정차상위 대상자	○	학기 중 증식비 전액	○		○
소득인정액 기준	중위소득 68% 이하			중위소득 80% 이하		
학교장 추천	○			○		

신청절차 및 지원내용



○ 선정절차



○ 지원내용

■ 교육급여

구 분	교육활동지원비	교과서 대금	입학금 및 수업료
초등학생	331,000원	-	-
중학생	466,000원	-	-
고등학생	554,000원	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	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
지원 횟수	연 1회	연 1회	입학금은 입학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
※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부모(학생) 계좌로 지급되며, 교과서 대금·입학금·수업료는 납부면제
(학교로 지급,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)

■ 교육비

구 分	고교 학비	급식비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교육정보화 지원	
				PC	인터넷 (유해차단비 포함)
초등학생	-				
중학생	-	학기 중 중식비 전액 (무상급식 학교 제외)	연 60만원 내외 지원	가구별 컴퓨터 1대	가구별 1회선
고등학생	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*				
지원 방식		학교 납부액 감면		직접 설치	요금 면제

* 교육급여로 입학금/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

교육급여 및 교육비 온라인 신청절차

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moe.go.kr) 접속

▶ 준비사항 : 공동인증서, 가구원의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,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

서비스 선택

-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(교육급여 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)를 선택



교육급여 선택

-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신청서비스 소개
- ▶ 교육급여 신청서비스 선택 시 교육비 동시 신청 가능

교육비 선택

복지서비스 신청하기

-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
- 복지서비스 신청 이용안내 및 신청 전 주의사항 안내



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

- 초중고 교육비 동시 신청 동의 여부 확인
 -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인정보 입력
 - 가족구성원 입력 및 자녀 학교선택
 - 입금 계좌 예금주 확인
- ▶ 교육비 단독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업로드 필요



가족정보제공 동의

-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
- 신청인은 본인과 만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동의
- ▶ 만19세 이상의 가족은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별도 동의 처리 필요



소득재산 신고

- 소득재산 등록 대상자 선택(부모 필수)
- 거주형태, 재산 및 부채사항 입력
- 추가서류 업로드(전월세계약서 등)



교육정보화 신청

- PC지원 신청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
- ▶ 교육비 동시 신청 동의 시 추가되며, 교육급여만 신청 할 경우에는 해당없음



신청서 작성 완료

-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완료 클릭
- ▶ 작성완료 이후부터는 수정할 수 없으며, [나의이용내역]에서 신청서 진행상태 조회가능

202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



교육급여, 교육비 보장 수준 강화

- 2022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**대폭 인상**하였습니다.
-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계 소득·재산 증빙이 어려우나,
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,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포함 가능

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인상

- **초등학생**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286,000원에서 **331,000원으로** 인상됩니다.
- **중학생**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376,000원에서 **466,000원으로** 인상됩니다.
- **고등학생**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448,000원에서 **554,000원으로** 인상됩니다.



※ 고등학생 교과서대금, 입학금 및 수업료 별도 지원(고교 무상 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)

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PC) 신청 가능

-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**복지로(www.bokjiro.go.kr)**에서 **온라인(PC)으로** 언제,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아울러, **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 가능**합니다.

문의처

-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-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☎ 1544-9654
- 읍·면·동 주민센터, 학교 및 교육청

